

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6] <개정 2020. 12. 31.>

권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·설비 기준(제2조제2항 관련)

구분	구조·설비
사좌	1.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.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1.2미터 이상일 것 3.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
사옥	1. 사옥이 사좌로부터 탄알받이까지 전체로 되어 있을 것 2. 사옥의 천장, 측벽 및 바닥은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. 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평탄할 것 나. 사좌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으로 5미터 이내의 천장 측벽 및 바닥은 두께 6밀리미터 이상(4밀리미터 이상)의 철판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다. 나 외의 부분의 천장, 측벽 및 바닥은 두께 4밀리미터 이상(3밀리미터 이상)의 철판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라. 사좌 및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으로 3미터 이내의 천장 및 측벽이 철판 또는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(3센티미터 이상)의 목재로 입힐 것 마. 라 외의 부분의 천장, 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튀어나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목재로 씌울 것 3. 사옥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 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·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설비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의 설비는 각각 제1호와 제2호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.
표적	1.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23미터 이상일 것 2.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3. 표적의 보호테는 목재여야 하며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금속류가 노출되지 않을 것
감적호	1. 표적조작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감적호의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되어 있을 것 2. 감적호는 별표 3의 별도 1과 같은 구조로 할 것
탄알받이	1. 표적 후방에 두께 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된 탄알받이가 있을 것

	것 2. 탄알받이가 사육의 천장 및 측벽과 밀착되어 있을 것 3. 발사탄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·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의 구조·설비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.
조명설비	1. 조명설비가 있을 것 2.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
그 밖의 사항	1.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2.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

비고: () 안의 숫자는 22구경 주변타격식 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에 적용한다.